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박 정 수

나. 생 년 월 일: 1954.10.20.

다. 소 속: (주)감정평가법인 정도 경인지사

(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34(구월동, 신영구월지웰시티 푸르지오) 디동 201호)

2. 징계내용

가. 징 계 종 류: 업무정지 6월

나. 효 력 발 생 일: 2024.01.15. ~ 2024.07.14.

다. 사 유: 6건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, 개별요인 비교, 거래사례 비교법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적용하는 등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4년 1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